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실무요령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목 차

I. 건설공사 간접비 현황 및 실태

- | | |
|----------------------------|---|
| 1. 배경 및 실태 | 7 |
| 2.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원인 및 대응 방안 | 8 |

II. 간접비 추가발생 최소화

- | | |
|---------------|----|
| 1. 추진방향 | 15 |
| 2. 간접비 지급 최소화 | 15 |

III. 간접비 산정기준

- | | |
|------------------|----|
| 1. 간접비 개념 및 구성항목 | 29 |
| 2. 간접비 적용기준 | 33 |
| 3. 간접비 항목별 산정기준 | 36 |
| 4. 간접비 원가계산서의 산출 | 40 |

IV. 관련규정

- | | |
|----------------|----|
| 1.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 43 |
| 2.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 50 |
| 3. 관련 판례 | 57 |



I . 건설공사 간접비 현황 및 실태

□ 지연현황

- 최근, 우리시를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기 연장시 간접비 소송이 제기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공기 지연시 귀책사유 구분 없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공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지체상금 미부과 관행화
- 명확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에도 장기계속 공사의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지급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간접비 추가 발생분 미지급
 - 발주처는 간접비 추가 지급 선례가 없고, 지급 세부기준 부재, 산정절차의 복잡, 사후감사 등의 부담으로 계약상대자와 협의 및 지급 회피
 - 건설업계는 그간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간접비 청구르 주저 했다고 주장, 최근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간접비 적극적 청구 또는 소송 증가
- 대표적 간접비 청구소송인 7호선연장 건설공사 1,2심 서울시 패소, 향후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건설공사 공기지연을 예방하여 간접비 추가발생을 최소화하고, 간접비 지급업무 관련 명확한 실비정산 범위 및 기준 등 제시필요

□ 간접비란?

-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 세부내역으로는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되며, 지방계약법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제도의 요건, 절차 및 효과를 규정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 간접비 발생 주요원인

- 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시 면밀한 분석과 계획수립 미흡
 -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정책의 변화, 민원 발생 예측, 관련기관 협의 부족으로 공사 중 계획변경시 이를 반영하는 절차 진행으로 공사이연
- 시 전체 SOC사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계획 등 종합적 판단 부족
 - SOC사업에 대한 市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및 확보 가능한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 미흡으로,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일단 사업 추진
- 계획·설계 등 공사착공 전 단계에서 지연요인 사전제거 노력 미흡
 - 편의상 토지보상, 지하매설물 등을 공사 착수 후 처리
 - 설계내용에 대한 누락·오류, 민원사항 미반영 등 전문가 검증 및 관계 기관 협의 부족

- 계절적 요인(우기 및 동절기 휴지일수), 현장의 실 작업 가능 시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 행정절차 비효율 및 공법개선 노력 부족
 - 인허가 절차,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의 비효율적 이행으로 공사지연
 - 최신기술 습득, 선진 시공방법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공기단축 노력 미흡

□ 자연에 대한 발주처 대응 실태

- 예산부족, 민원발생 등을 공사연장이 불가피함에도 해결방안 미제시
 - 민원 발생에는 적극적인 반면 공기 지연에 따른 대안 제시에는 소홀
-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발생 여부 등 검토 소홀
 - 현장관리 인력 및 경비 등 최소한의 상주인력에 대한 실 투입량 등
- 추수별 준공시 간접비 검토를 간과하여 대규모 소송 벌미 제공

□ 타 시도 소송 대응방안

- 서울특별시 : 현재 20여건 정도 간접비 소송이 진행중이며, 시 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중임.
- 인천광역시 등 4개광역시 : 현재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8 건 정도 간접비 소송이 진행중으로 각각의 공사별로 여건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음.

※ 인천종합건설본부 : 소송사건 지원TF팀구성(변호사포함12명)

□ **건설본부 간접비 청구소송 현황** > 총 8건 520억(市 간접비 소송의 90%)

구분	사 건 명	당 사 자		소송 가액	진행상황	주관부서
		원고	피고			
민사 소송	① 제2백스코 건설 공사대금청구	현대건설 외6 ▷ 법)울촌(김남호)	부산광역시 외1 ▷ 정부법무공단(정성윤)	87억	3심(1심, 2심 일부 패, 74억)	건 설 본 부 (건 축 1 팀)
	②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	일경산업개발(주) ▷ 강경호	부산광역시 ▷ 법)정인(이기중)	22억	2심 (1심 일부 패 15억)	건 설 본 부 (도로 건설 1 팀)
	③ 남북향대교영도 연결도로 (1공구) 공사대금 청구	SK(주), 대보 ▷ 법)울촌	부산광역시 ▷ 정부법무공단(정성윤)	123억	1심	건 설 본 부 (도로 건설 1 팀)
	④ 남북향대교영도 연결도로 (2공구) 공사대금 청구	금호산업(주) ▷ 법) 울촌	부산광역시 ▷ 정부법무공단(정성윤)	72억	1심	건 설 본 부 (교 량 건설 2 팀)
	⑤ 남북향대교영도 연결도로 (1, 2공구) 공사대금 청구	(주)삼정 ▷ 박용표	부산광역시 외 SK, 금호 ▷ 정부법무공단(정성윤)	161억	1심	건 설 본 부 (도로 건설 1 팀)
	⑥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2공구)	(주)범아건설	부산광역시	7억	1심	건 설 본 부 (교 량 건설 1 팀)
	⑦ 부산향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주)태영건설	부산광역시	44억	1심	건 설 본 부 (도로 건설 1 팀)
	⑧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 (장림처리구역)	(주)성래종합건설	부산광역시	4억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	건 설 본 부 (토 목 2 팀)

□ **간접비 소송 및 판결 추세**

- 대형공사 시행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간접비 청구소송 다수발생 예상

※ 서울 : 현재 20여건 정도 간접비 소송이 진행중

※ 인천 등 4개광역시 : 울산시를 제외하고, 1건 ~ 8건 정도 간접비 소송 진행중

- 법원 판결도 원고(시공사)측 청구 의견을 수용하는 추세

□ **대응방안**

기 준	시장님 결재('16.11.23.)	변 경
• 소송사건 수행 주관(법무담당관실 송무팀) • 소송사건 보조(소관부서)	➡	• 소송사건 수행 주관(해당부서) • 수행지원·책임변호사 운영(송무팀)

- 현재, 소송사건 수행 주관을 공사시행부서에서 대응 방침

- 건설본부 소송전담 T/F팀 운영 및 소송분야 전문직위제 운영계획

※ 서울시 간접비 소송 T/F팀 운영경과

: '15. 1.23[기반시설본부장 직속 T/F팀 운영, 팀장 1(시설5급), 팀원 8]

→ '16. 8월 市 본청 통합 운영(4.12 방침결정, 7월 업무이관, 8월 전면시행)

□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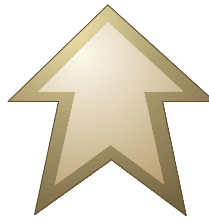
- T/F 구성 전담인력 보장 ➤ 토목 5급 1 / 6급이하 4(행정 1, 토목 2, 건축 1)



Ⅱ . 간접비 추가발생 최소화

추진목표

공사지연 방지로 간접비 최소화 및 산정기준 제시



추진방향

간접비 최소화 실무요령

지연요인 사전제거 및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 ① 계획단계부터 공기 지연요인 사전제거
- ② 자원확보를 통한 사업비 적기 투입
- ③ 공사중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최소화
- ④ 공사중 시공방법 개선 및 민원발생 방지

부득이한 경우
간접비 지급 최소화

- ⑤ 지연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⑥ 간접비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 ⑦ 간접비 지급 소송 대응능력 강화

의사결정 간소화,
신기술 도입 등 개선

- ⑧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 ⑨ 최신기술 습득 및 선진시공방법 도입
- ⑩ 공사 지연에 대한 대시민 공개

- 건설공사는 완벽한 설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수행되며,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정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체결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연장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여건이 계약 종료시 또는 계약이 종료 되어야 발생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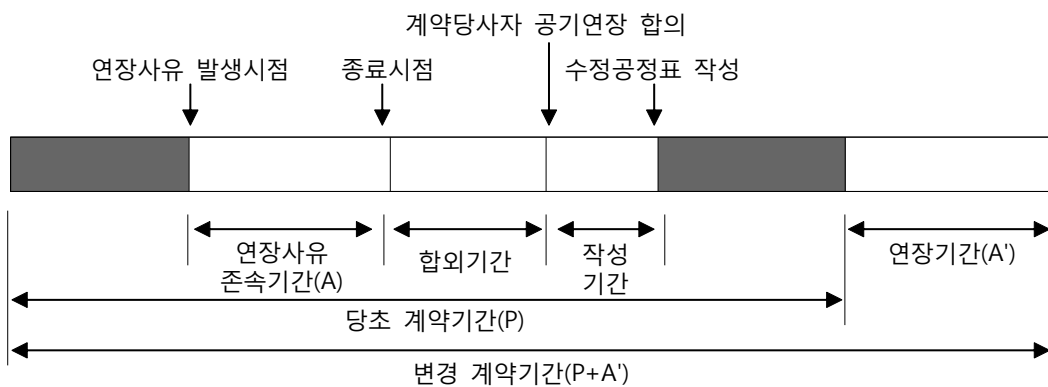


그림 1. 공기연장 합의기간 및 수정공정표 작성기간의 고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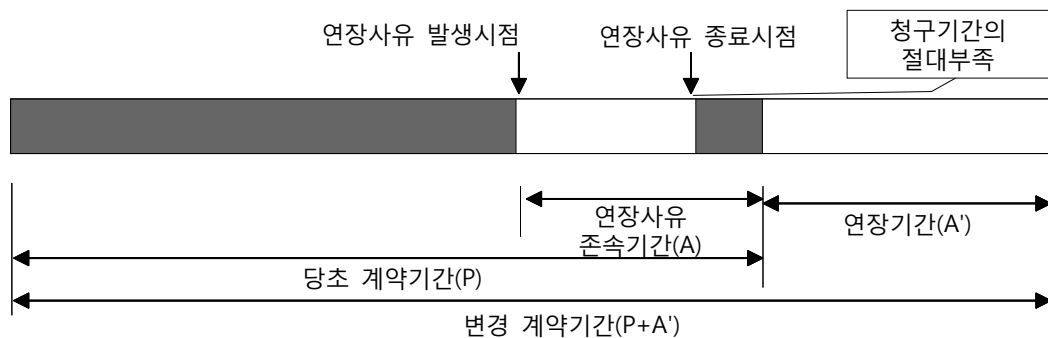


그림 2. 당초계약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연장사유 종료되는 경우²⁾

1) 2) 조영준, 계약기간연장조항의 연장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28권 제1호(통권279호) 2012.1. p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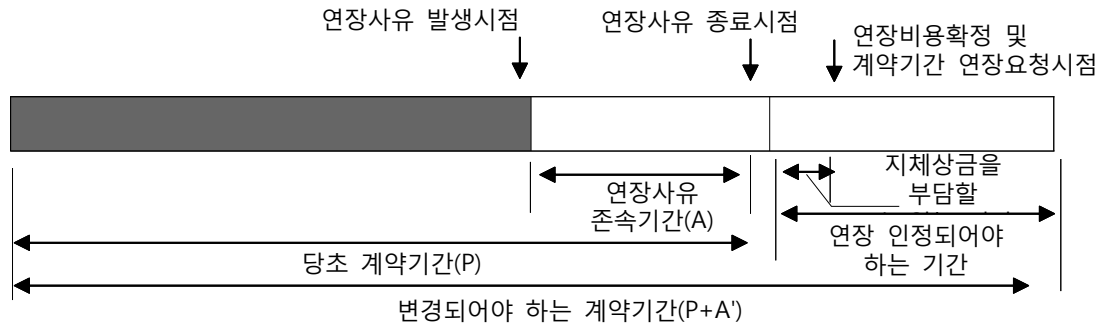


그림 3. 계약기간 종료이후 연장비용 확정되어 계약기간연장 신청시³⁾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등에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 잠재
 - 간접비의 객관적 산출기준 마련 및 총사업비 조정 반영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지체사유 발생시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조치 사항을 공문으로 작성하고
- 공사진행중 각 단계별로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명 자료를 평소에 충분히 확보하여 간접비 분쟁 발생시 선제적 대응 필요
 - 차수별 공기연장사유발생시 시공사에서 작성한 현장유지관리계획서(인력 및 장비 등), 감리검토의견서, 발주처 승인공문
 - 공사감독의 현장확인 복명서 등

3) 조영준, 계약기간연장조항의 연장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제28권 제1호 (통권279호) 2012.1. p162

1

계획단계부터 공기 지연요인 사전제거

① 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조사로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시 조사항목에 민원발생 검토분석 사항 추가
 - 수요자, 주민, 시의회 등 민원발생을 사전 예견하고, 주변조사 등 인문학적 조사 후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사업비 등 반영
- 사업초기부터 공사시행부서 참여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반영
 - 계획단계에서 예산을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보완공사를 추진하는 관행 근절
 - 계획부서에서 공사부서에 설계·공사 의뢰 전 공기의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통한 협의 후 검토된 공사기간, 공사비를 반영하여 의뢰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내실화를 통해 적정 공사기간 반영

- 설계시 공개적으로 합동 토론회 개최
 - 시민의 입장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설계에 반영
- 충분한 설계기간 및 비용 확보로 고품질 설계
 -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지하 지장물조사 등의 내실화로 부실한 설계 방지
 - 착공전 설계도서 및 예정공정표 비교·검토 강화로 누락·오류 발행,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방지

③ 토지보상 등 행정적 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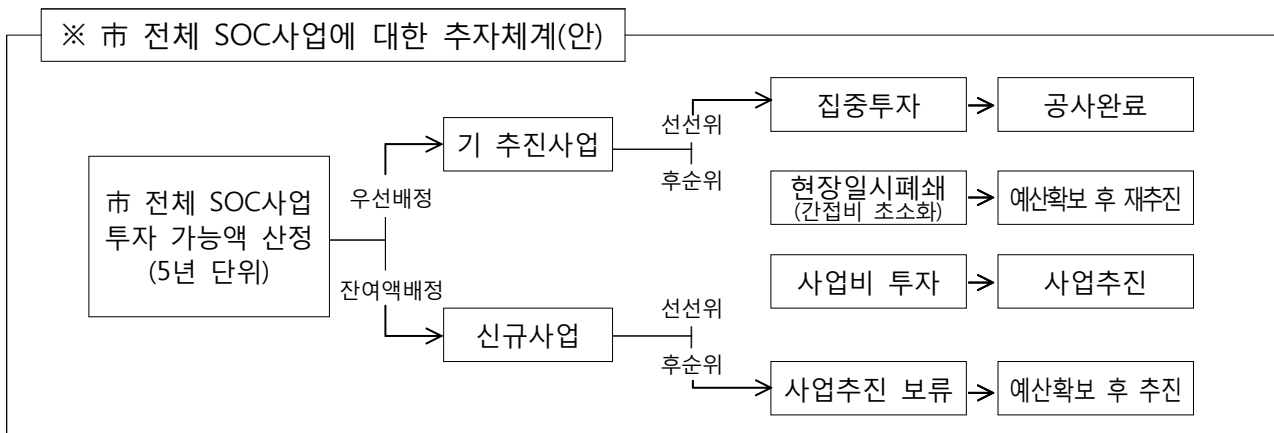
- 철거용이 등을 이유로 한 관행적인 선 발주·후 현장 보상해결로, 실제 공사기간이 줄어들며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 방지
 - 설계시 보상면적과 일시점용 면적을 확정하여 공사 발주전 보상을 실시하고, 선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상을 위한 추가 공기 반영
- ※ 감정평가, 보상협의, 수용, 수용재결 등 절차 이행으로 1년 이상 소요

-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관계기관 요구사항 처리로 인한 지연 방지
- 지장물 협의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는 발주기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충분히 반영

2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비 적극 투입**(예산담당관 협조)

① 市 전체 SOC사업에 대한 총액제한제 등 안정적 사업비 확보

- 市 전체 SOC사업의 장기적인 투자가능 총액을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여부 결정
- ※ 현재는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보다는 정책분야별, 실·분부·국별로 주어지는 예산 실링(ceiling)의 범위내에서 각각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확보



- 별도의 SOC사업 심의기구 운영을 통해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결정
-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주요사업은 집중투자를 통해 적기 공사 완료
- 신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심의기구 협의 후 사업비 투자 가능시기 판단

② 향후 발주예정 사업 중 핵심사업은 계속비 공사로 추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간접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점 내포
-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도 60일 초과시 별도 이자 지급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74호)>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정지 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 장기계속공사는 사업비가 예측 가능하여야 간접비의 추가지급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계속비 공사로 사업추진 방안 검토 필요

※ 계속비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음

구분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
운용방식	수년간의 예산 확정 불가시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공사 시행 (차수별 계약)	총 공사기간과 소요 예산을 확정 하여 공사시행(차수계약 없이 1회 확정계약)
차이점	- 재정허용 범위 내에서 매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확보 후 계약. - 총공사 금액은 부기금액으로 하고 예산확보에 따라 차수별 계약 (전체 예산확보 없이도 발주가능) - 시 재정 운영에는 유리하나 공사 지연 가능성 내재 및 간접비 증가	-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 전액을 확보, - 사업비 적기 투입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완료 - 총공사 금액으로 계약하고(연부액 부기)수년에 걸쳐 지출

3 공사중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최소화

-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
 - 불가피성, 적정성,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
-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본부 자체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
 - 자문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 기간 부여
 - 단가적용 및 변경물량의 적정성, 변경되는 공법의 적정성 등 심층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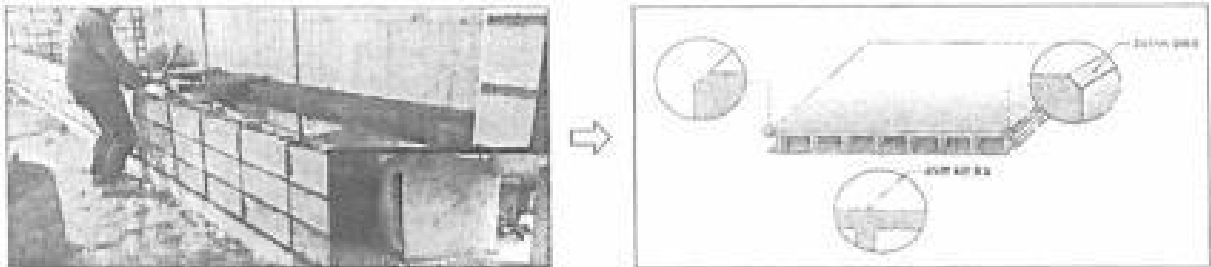
- 설계변경 물량증가로 인한 연장기간은 실비산정 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변경 계약시 계약서에 구체적 사유 명기
 - 예시) 변경계약 사유 :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발주처 귀책 없음)

4 공사중 시공방법 개선 및 민원발생 방지

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인 시공

- 공장제작 구조물(P.C) 활용 확대 : 교각 거푸집, 정거장 기능실 칸막이 등

※ 정거장 기능실 칸막이 개선사례 : 블록공사→압출성형시멘트 판넬



- 우수한 성능의 장비와 숙련도 높은 유경험자 투입으로 작업효율 제고
- 지하철 시스템분야 공사시공방법 개선 : 순차시공→병행시공
 - 송변전/전차선, 신호, 통신공사 등 상호 간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행 시공

② 진동·소음방지 공법으로 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방지

- 공사시 무진동 굴착공법 적용, 현장내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저감
 - ※ 기초 암깨기 : 일반 발파암 깨기 → 유압 할암 파쇄공법
 - ※ 주택가 지하 암반 발파 : 일반 발파 → 무진동 또는 미진동 발파공법 적용

①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구분

- 민원발생, 지장물 이설, 인·허가 등 절차 추진, 안전점검 지적 사항조치,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구분
 -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지연사유별 입증자료 확보
 - 지연사유 발생시 지연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한 공정표 첨부 자료 축적
- 귀책사유 책임소재 구분방법
 - 실비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없고 공사 착수전 사전 확정이 불가함으로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산출기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사진행중 합리적 소명 자료의 축적이 중요
 - 공기 연장시 연장공정에 대한 CPM공정표를 제출받아 Critical Path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로 귀책사유 구분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및 연장기간은 실비 산정 대상기간 불산입

② 책임소재에 따른 간접비 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 확행

- 발주처의 사유인 경우, '간접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지급 하되 지급 최소화 방안 강구
 - 기간계산, 항목별 지급액, 입증자료, 지급시기 등 구체적 사항 검토
- 시공사의 사유인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확행
 - 계약금액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 일수를 곱하여 부과
- 발주처 책임과 시공사 책임 혼재시 정산 후 상계
 - 예시) 공기 100일 연장시 시공사 책임 60%일 경우 지체일수 60일로 계산

6

간접비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① 공사지연에 대한 행정조치 적극 이행으로 간접비 최소화

- 지연사유 발생 즉시 현장유지·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제출 받은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투입 억제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 계약 시 합의서에 귀책사유(발주처 00%, 계약대상자 00%)를 구분 명기하여 징구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통한 이행여부 확인 및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확인과 자료에 의거 입증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접비로 인정

②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하여 소송발생 최소화

- 각 차수별 계약기간 종료 전에 간접비 청구토록 안내
 - 청구내용이 없을 경우라도 공문으로 '청구사항 없음'을 통보 받아 관리
- 시공사는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확인을 간접비 추가발생분 지급 신청하고, 발주처는 매뉴얼에 따라 지급(안) 마련 후, 심의위원회 심의상정
 -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정 지급

※ 간접비 지급 심사위원회

- 위원 : 건설분야, 회계분야, 법률분야 등 전문가 10인 이내
- 기능 : 시공사 청구내용 및 지급계획에 대한 심사, 지급방안 및 대안제시 등
- 운영 : 사안 발생시 수시개최

-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협의 후 최종 확정
 - 계약상대자 미수용시 간접비 분쟁위원회 또는 소송 대비

③ 계약서 작성의 내실화

- 계약서 통상적으로 인쇄된 서식에 따라 서명 날인만 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쌍방 검토 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내용 중 일방적인 내용 등 수정
- 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등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로 귀책사유에 따라 추가 비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차수별 귀책사유 구분을 명문화
 - 최근의 판례는 계약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쇄된 문구를 인정하지 않음
<판례>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동의 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 및 추가 소요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서면에 의해 발주자에게 공기연장 신청을 의무화 하도록 명시

7

간접비 지급 소송 대응능력 강화(법률담당관과 협조)

① 법률지원 등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

- 계약·법률·건설분양 전문가, 유관기관·부서가 참여하는 T/F 운영
 - 최근의 판례분석,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 소송수행 등
- ※ 간접비 관련 7개 공사 407억원 소송 진행중
- ※ 지하철 7호선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 서울시 2심 패소(청○구액 141.3억원)

② 간접비 소송 대비 직원 교육

- 소송 진행중(예정) 대상 사업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 : 반기 1회
 - 간접비 지급 실무요령, 소송 대비 대응방안, 체계적 소송관리 등

8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① 주요 결정사항 본부장 주관 집단토론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 발주부서, 시공부서, 시공사, 감리단, 운영주체, 전문가 등 동시 참여

② 승인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개선

- 빈번한 자문회의 방지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기지연 방지
- 각종 심의, 자문기구 등을 통합하여 승인 절차 간소화
 -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등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한 번에 심의
 - ※ 예) 설계변경시 각종 자문, VE, 기술심의, 설계변경자문(소·본 위원회)
 - 사전에 충분한 구두협의로 문서보완 반송 등에 소요되는 기간 축소
- 각종 업무 절차서 미 처리양식 등 표준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①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 습득 및 선진시공방법 도입

-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기술적 개선 필요시 검토회의 개최
 - 전문가,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 참여 최신기술 도입 가능 여부 등 검토
-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
 - 선진시공방법,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 ※ 필요시 용역을 통해서 신기술 도입하여 설계 반영

② 신공법 도입 등 공사기간 단축 업체 인센티브 부여

- 우수업체 시장표창(상·하반기 2회)
- 우수사례 관리 및 전파(우수사례 DB관리)



Ⅲ. 간접비 산정기준

1 | 간접비 개념 및 구성항목

□ 건설공사 ‘간접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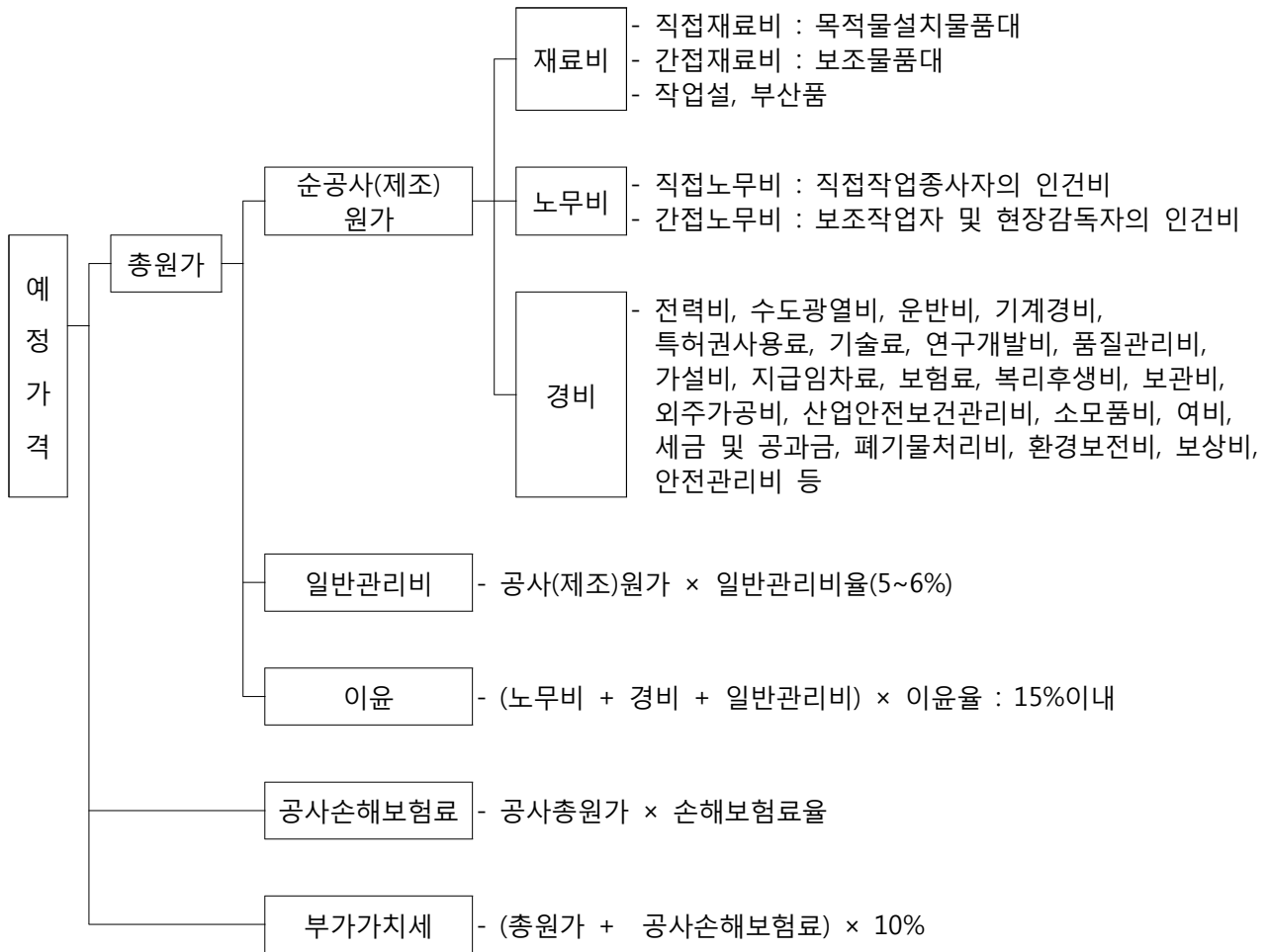
- 공사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으로 전체 공사비의 약 30~40% 차지
-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 유지관리 등을 위해 간접비 추가 발생

항목	검토내용
간접노무비	• 공기연장 발생시 연장기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 계획안 적정성 검토 • 발주처와 협의(승인) 인력에 한정하여 간접노무비 인정
경비	• 실비로 정산되는 경비의 증빙자료의 인정여부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명확한 협의
일반관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산출내역비율)
이윤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산출내역비율)
공사손해보험료	• 계약상대자 납부확인서

- 관련 규정상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원가계산상의 계약된 간접비 외에 실제 투입된 간접비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토록 규정

□ 공사비의 구성

- 총 공사원가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액으로 구성
- 총 공사원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예정가격으로 분류



□ 간접비 구성항목

○ 간접노무비

-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⁴⁾과 제수당⁵⁾, 상여금⁶⁾,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

4)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

5)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6) 상여금 : 기본급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음

○ 경비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
-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 간접비 산정을 위한 시간변동 경비는 아래와 같으며, 시간 변동과는 관련없이 시공물량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시공변동 경비는 제외

시간변동 경비	내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참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여비·교통비· 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세금과 공과	당해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등을 말함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여,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함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시공변동 경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외주가공비, 퇴직금 제부금비,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함
-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 이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공사손해보험료

-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
- 공사손해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

□ 적용규정

- 2009.8.6 이전 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적용
- 2009.8.7 이후 입찰공고 :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부칙(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발주처 귀책사유가 명백한 공기연장시의 실비산정

- 계약상대자가 공기연장 사유 발생 즉시 통지문서로 제출한 경우
 -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 건설장비의 유희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조정을 요구
 - 계약상대자가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에 대비 실비 인정범위 등 문서화 조치
-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수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 잔여공사의 현장여건상 불합리한 인력투입계획 등은 수정 요구
 - 향후 계약금액 조정시 분쟁에 대비 발주처에서 수정 요구(상호간 합의)한 경우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산 한다는 문서 통지 또는 합의서 작성

- 실비산정 대상기간 = 수정 후 전체공기 - 수정직전 전체공기
-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함.

※ 계약금액조정 협의시 권장사항

- 당초 산출내역서에 의한 산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
⇒ 간접노무비 = 일평균 간접노무비 × 공기연장기간(일수)
• 일평균 간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 당초 계약공사기간(일)

□ 계약당사자간 공기연장 귀책사유가 혼용된 경우의 실비산정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일정부분 공기연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정직전 공정표상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진공정 부분은 제외
- 계약당사자간 귀책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혼재된 경우 상호 상계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등 합의 처리

□ 계약금액의 조정 적용 제외

- 계약상대자에게 착공 지연을 사전 통보하여 연장된 경우
- 전면 공사 중지로 인한 실비(별도 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공사기간 변경을 수반한 경우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조정절차

구분	추진절차	관리 및 의무자	비고
계약변경 이행단계	공사 계약 및 착공	입찰 및 계약 착공계 제출	계약당사자 발주처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 발주처 계약금액 조정여부 문서화
	↓		
	공사이행기간 변경사유 발생	발주처 귀책사유 발생	
합의단계	↓		계약상대자
	공사 변경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구 통지	
합의단계	변경 계획서 제출 (시공, 안전, 품질 등)	• 수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발주처
	↓		
	수정공정표 및 인력 투입계획서 검토	인력투입계획 및 건설장비의 유희 등 검토·조정 요구	
합의단계	↓		발주처, 계약상대자
	합의 및 변경계약	공기연장 사업관리	
	↓		
합의단계	계약금액 조정 신청	• 실비정산 증빙자료 제출 • 자료 검토 및 협의	계약상대자 → 발주처 발주자 → 계약상대자
	↓		
	준공대가 지급	• 최종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 • 준공검사 및 준공대가 지급	

간접비 항목별 산정기준

□ 대상

- 제외대상
 - 현장의 공사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인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대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 노무량

- ## ○ 단가

- 변경사유 발생전 최근 3개월의 급여 등 임금 지급 관련서류를 참고
- 해당 직종의 적정한 단가를 적용(계약당사자간 합의 필요)

□ 산정기준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연번	성명	담당업무	급여항목	해당기간 근무월					소계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	홍길동	현장소장	기본급							소계/12	소계+퇴직 급여충당금
			제수당								
			상여금								
2		공무	기본급							소계/12	소계+퇴직 급여충당금
			제수당								
			상여금								

- ① 기본급 : 급여명세서상에 지불된 급여로서 기본급 및 본봉을 계상
- ② 제수당 :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 수당 등 통상적 지급 금액
- ③ 상여금 : 기본급의 40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실 지급액
- ④ 퇴직급여충당금 : (월별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12)×근무개월수

- 유의사항

-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 볼 수 없는 성과격려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 급여지불조서 및 보수규정(근로계약서)을 확인하여 제외

2 경비 및 제비율

□ 직접계상 항목

-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비자료 확인 계상

①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에 한함.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임차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② 보관비, 가설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시설, 설비 등의 비용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생한 비용

③ 유휴장비비

-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건설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인정될 경우 계상
 -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 표준품셈에 의한 시간당 손료의 50%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년간표준가동시간÷365일)×(유휴일수)×1/2

④ 기타실비

-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공기연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비용

□ **비율계상 항목**

- 산출내역서상 승률비율 적용(단,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
-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text{산재보험료} = \text{노무비} \times \text{보험료 요율}$
--

②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text{고용보험료} = \text{노무비} \times \text{보험료 요율}$$

③ 기타경비

- 경비의 주요 항목 이외에 7개 항목의 제경비 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재료비+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text{기타경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times \text{기타경비율}$$

④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공사원가 소계에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

$$\text{일반관리비} = (\text{간접노무비} + \text{경비} + \text{기타실비}) \times \text{일반관리비율}$$

⑤ 이윤

- 영업이익
- (공사원가 소계+일반관리비)에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

$$\text{이윤} = (\text{간접노무비} + \text{경비} + \text{기타실비} + \text{일반관리비}) \times \text{이윤율}$$

3

보증수수료

□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납부확인서 등 실비 계상

-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보증기간 연장된 실비
 -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에 반영 정산

4

간접비 원가계산서의 산출

구분		산출방법	비고
1. 간접노무비		실비(현장관리 투입 인원의 보수총액)	
2. 경비		가 + 나	
가. 직접계상 비목		(1) + (2) + (3) + (4)	
(1) 지급임차료		실비(증빙자료)	
(2) 보관비		실비(증빙자료)	
(3) 가설비		실비(증빙자료)	
(4) 유희장비비		- 임대장비 : 실비(증빙자료) - 보유장비 : 설비산정기준	
나. 비율계상 비목		(1) + (2) + (3)	
(1) 산재보험료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관련법령 요율 확인
(2) 고용보험료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요율	관련법령 요율 확인
(3) 기타 경비	수도광열비	(제+노) × 산출내역서상 요율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3. 보증수수료		실비(증빙자료)	
4. 기타 시비		실비(증빙자료)	
소계		1 + 2 + 3 + 4	
5. 일반관리비		소계 × 산출내역서상 요율	
6. 이윤		(소계+일반) × 산출내역서상 요율	
7. 공사손해보험료		실비(증빙자료)	
8.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서상 요율	
합계		소계 + 5 + 6 + 7 + 8	



IV. 관련규정

1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

1 국가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 (물가변공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96.12.31]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99.9.9]

2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0호, 2015.1.1. 일부개정] [시행 2015.1.1.]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항(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28호, 2015.3.1. 일부개정] [시행 2015.3.1.]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의 산정기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 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탄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희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 유희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text{장비가격} \times \text{시간당 장비손료계수}) \times (\text{연간표준가동기간} \div 365\text{일}) \times (\text{유희일수}) \times 1/2$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공식>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가)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공규·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

1

지방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2조 (물가변공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u>별 제22조</u>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u>제73조</u>와 <u>제74조</u>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u>제74조제7항</u>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일 2010.10.27]]	제74조의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u>영 제75조</u>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u>제72조제8항</u> 및 <u>제9항</u>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일부개정] [시행 2015.1.5.]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 1) 계약담당자는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4”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가”의 해당 직종의 단가는 대상자의 업무수행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적정한 단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참고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경비 중 “라”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희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희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 1) 임대장비 : 유희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2) 보유장비 : $(\text{장비가격} \times \text{시간당 장비손료계수}) \times (\text{연간표준가동시간} \div 365\text{일}) \times \text{유희일수} \times 1/2$

4. 그밖의 실비의 산정

“2”와 “3”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4”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장 제5절 제3관 “5-나”(간접노무비)

제3관(공사 원가계산)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

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가”의 경우에는 “1-마”를 준용한다.

라.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아”부터 “차”까지를 준용한다.

제7절 4.마항의 “1-아”부터 “차”의 규정

아. 발주기관은 “가”부터 “사”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계약담당자는 “아”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증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사”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사의 일시정지

-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건명 (판결법원)	2012나6578 공사대금(부산고등법원)
당사자	○ 원고 : 피큐건설 주식회사 외 1개사 (소송대리인 조현래) ○ 피고 : 은평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홍익 안동일, 윤성한 변호사)
계약형태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 최초계약 : 84.82억원 ○ 최종준공 : 284.17억원
공사연장기간	○ 당초 : 2005. 4.21.~ 2007. 4.10.(2년) ○ 변경 : 2005. 4.21.~ 2010. 2.28. (4년 11개월) ※ 연장기간 : 1,054일 (2년 11개월)
청구취지	피고 귀책사유인 도로용지 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므로 간접공사비 추가지급 청구
청구금액	청구금액 772,176,011원
청구원인 (원고주장)	○ 당초 준공기한이 2007. 4.10. 이었으나 피고의 도로용지 매입지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 연계된 재건축사업 추진지연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2010. 2.28.경 준공됨으로써 공사기간이 1,054일 연장됨. ○ 공사완료 전인 2010. 2.24.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증액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연장된 1,054일중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기간을 제외한 794이에 해당하는 추가간접비 772,176,011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23조에 따라 청구.
피고주장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원고들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적법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함. ○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물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 ○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비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물량 등의 조정을 통하여 이를 보상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음.

재판부판단	○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당사자이 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에 앞서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 라면 이는 차후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조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나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통상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각 차수별 계약은 하나의 독립된 계약이고 각 차수에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각 차수별 계약내용에 반영된다고 봄이 상당함 ○ [1차~4차 계약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4차공사를 완성(2009. 2.28.)하여 그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 2010. 2.24. 피고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 하였음을 인정 ○ [5차 계약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2010. 2.26. 피고로부터 5차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0. 2.24. 피고에게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5차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그 기성금액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함 ○ [추가비용의 수액에 관하여] 5차 공사중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연장기한을 제외한 공사연장 기간은 [실제 공사기간 - (최초 예정기간 × 변경된 공사 금액 / 최초예정 공사금액)] 위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는 [실제 공사기간의 간접공사비 × 간접비 공사비 산출기간 / 실제 공사기간]임
판결내용 및 판결일자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 정당함) 2013. 5. 21.
인정금액	209,162,861원
인정비율	27.08% (청구액 772,176,011원, 인정액 209,162,861원)

사건명 (판결법원)	2012가합103053 간접비 등 (대전지방법원)
당사자	○ 원고 : 삼부토건 외 3개사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 피고 : 한국철도시설공사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길)
계약형태	장기계속계약 (1차내지 6차), 계속비계약(7차)
계약금액	○ 최초계약 : 939.98억원 ○ 최초준공: 1232.3억원
공기 연장기간	○ 당초 : 2003.12.30. ~ 2007.12.29. (1,460일 : 4년) ○ 변경 : 2003.12.30. ~ 2011.12.31. (2,923일 : 8년 3일) ※ 연장기간 : 증 1,463일 (4년)
청구취지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 1,463일 연장에 따른 실비 (간접비 등) 청구
청구금액	○ 청구금액 110,000,000원 - 간접노무비 1,988,939,723원, 직접계상 경비 171,508,410원, 승율계상 비목 142,467,750원, 일반관리비 113,349,520원, 이윤 257,622,216원, 부가세 267,388,761원 등 - 총 2,941,276,000원 중 110,000,000원 청구
청구원인 (원고주장)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한 공기연장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가 간접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요구하는데 피고가 응하지 않는 등 계약금액 조정거부
피고답변	○ 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액은 각 공사 도급변경 계약시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 원고들은 증액되어야 할 초과간접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 판단	○ 계약금액신청을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 <u>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액은 각 공사 독브 변경 계약 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 자료만으로는 이를 초과 하여 증액되어야 할 간접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u> - 또한 원고들에게 증액되어야 할 초과 간접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u>공사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u>

	- 그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판결내용 및 판결일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13.6.20.)
인정금액	기각
인정비율	기각

사건명 (판결법원)	○ 2011다45989 공사간접비 (대법원) ▶ 상고기각 ○ 2010나76841 공사간접비 (서울고법) ○ 2009가합11576 공사간접비 (인천지법)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해동종합건설 외 3개사 (소송대리인 : 변호사 장인태, 우재욱, 안태훈) ○ 피고 (상고인) :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 이종엽 변호사)
공기 연장기간	○ 당초 : 2000.12.26 ~ 2004.12.24. ○ 변경 : 2000.12.26 ~ 2009.04.30. ※ 연장기간 : 증 52개월 (4년 4개월)
청구취지	지장물 보상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및 공사중단 지시 등으로 공사기간 52개월 연장에 따른 실비(값비공사비 등) 청구
청구금액	○ 청구금액 1,619,750,000원 - 해동종합건설 421,135,000원 (청구금액 × 26%) - 성원산업개발 404,937,500원 (청구금액 × 25%) - 우진종합건설 404,937,500원 (청구금액 × 25%) - 기승종합건설 388,740,000원 (청구금액 × 24%)
청구원인 (원고주장)	○ 주위적 주장 - 공사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 52개월간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2008.5.14 피고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요청. - 준공기한인 2004.12.24.이후인 2005. 1. 1.부터 연장된 준공기한인 2009. 4.30.까지의 간접공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요청
피고답변	○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 차수별 공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하나 차수별 공사의 준공까지 마친후 계약금액 조정신청하여 원고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각 차수별 기본계약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 뒤 각 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해 확정적으로 대가 지급을 마쳤다. ○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 원고들의 하도급업자들의 공사거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등에 기인한 것
재판부 판단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계약금액신청을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① 계약상대자에 대한 상대방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계약금액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신청한 후 지급된것이라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의 대상이 안된다. ③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차수별 공사의 기성금액의 지급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④ 1~6차까지 계약은원고 등이 피고에게 적법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⑤ 7차계약에서 기성금액의 지급 완료되기 이전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고, 용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연장된(51일) 사실 인정하여 피고는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이 피고와 합의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이상 이유없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의 적법한 조정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역시 이유 없다.
판결내용 및 판결일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정당함)
인정금액	○ 간접노무비 31,139,036원. ○ 직접계상 경비(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10,777,076원 ○ 승률계상비목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2,768,944원 ○ 부가가치세 4,468,505원 ∴ 총 합계 49,153,563원
인정비율	1.48% (청구액 3,318,074,647원 인정액 49,153,563원)

사건명 (판결법원)	○ 2011년 45989 공사간접비 (대법원) ○ 2010나 76841 공사간접비 (서울고등법원)
당사자	○ 원고 : 해동종합건설외 3개사 (소송대리인 : 변호사 장인태) ○ 피고 :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명문, 박희문, 김신욱 변호사)
계약형태	단년도 계약 (장기계속차수별계약이 아닌 1회계약 계속비계약과 유사)
계약금액	○ 최초계약 : 190억원 ○ 초종준공 : 295.6억원
공기연장기간	○ 당초 : 2000.12.26 ~ 2004.12.24 (1,459일 : 4년) ○ 변경 : 2000.12.26 ~ 2009.04.30. (3,046일 : 8년 4개월) ※ 연장기간 : 증1,587일 (4년 4개월 : 52개월)
청구취지	지장물 보상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공사중단 지시등으로 공사기간 1,587일 연장에 따른 실비(간접비 등) 청구
청구금액	청구금액 1,619,750,000원 (간접노무비 911,166,762원, 경비 371,550,081원, 일반관리비 46,036,588원, 이윤 143,746,569원, 부가세 147,250,000원)
청구원인 (원고주장)	○ 총10회 공사기간 연장 동안 피고의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요구를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공사감독관은 실비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준공기한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2008.05.1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2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서면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추가로 투입한 간접공사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불가로 반려. ○ 2009.4.27자 <u>변경계약서에 기타 변경사항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에 대하여 추후 법원 등 제3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라 해결하기로 함"</u>라는 내용을 부기
피고답변	○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되는 부부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0회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총10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조정된 계약금액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공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피고와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들은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도급계약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설령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의 계약대로 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
재판부판단	○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계약금액에 그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14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사기간의 개시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u>다만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으므로(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다 28825 판결 참조)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u> ○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2008 5.14.자 계약금액 조정신청 이후에도 기간연장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서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권자의 행위내지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참조) ⑤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는 2009. 4.27.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에 대하여 추후 법원 등 제3기관의 판정결과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니다.”하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8. 5.14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

	서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에 원고들이 연장에 공사기간에 지출한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및 판결일자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의 액수 -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이 사건 공사기간이 2004.12.24에서 2009.4.30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원고들이 2005.1.1부터 2009.30.까지 지출한 - 간접공사비 합계1,619,750,000원(=간접노무비 911,166,762원, 경비 371,550,081원, 일반관리비 46,036,588원, 이윤 143,746,569원, 부가세 147,250,000원)임을 인정 피고는 위 1,619,750,000원을 원고들의 출자비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타	이 사건 공사와 계약형태가 다름.